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영실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
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
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시장은 도시공원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는 책무가 있
는바,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
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
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
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
규정하였습니다.(안 제3조제2항)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